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672

발의연월일 : 2023. 3. 15.

발 의 자:김한규·김병욱·강훈식

홍성국 • 황운하 • 윤영덕

이용우 · 강병원 · 송재호

위성곤 • 조오섭 • 강민정

민병덕 • 박용진 • 서영석

윤호중 의원(16인)

제안이유

다수가 참여한 거래정보기록을 공유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보관하며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 및 관리하는 기술인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자산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암호자산 거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 입법은 미비한 상황임.

또한 한국은행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디지털화폐(CBDC)는 암호자산과 달리 규정될 필요가 있고, 암호자산 중 기존 원화와 유사하게 쓰여 통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등은 통화신용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방안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암호자산업자에게 이용자의 예치금과 암호자산에 대한 관리 및 보호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거래과정에 있어서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감시의무를 부과하여 암호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CBDC)를 암호자산에서 제외하고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암호자산의 경우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암호자산을 분산원장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기술에 기반하여 전자적으로 저장 및 이전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표로 정의하고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을 암호자산에서 제외함(안 제2조).
- 나.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자산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암호자산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암호자산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경우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암호자산업자 자기 소유의 암호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하게하는 등 이용자의 암호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암호자

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8조).

마. 금융위원회에 암호자산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 시정명령 권한 등을 부여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은행이 암호자산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제10조).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암호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암호자산시 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암호자산"이란 분산원장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기술에 기반하여 전자적으로 저장 및 이전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 다.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 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 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 사.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암호자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암호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 나. 암호자산을 다른 암호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 다. 암호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라. 암호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 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3. "이용자"란 암호자산업자를 통하여 암호자산을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4. "암호자산시장"이란 암호자산의 매도·매수 또는 암호자산 간 교 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 제3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암호자산 및 암호자산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

제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

- 제5조(예치금의 별도관리) 암호자산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암호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 제6조(암호자산의 보관) ① 암호자산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암호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용자명부 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1.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 2. 이용자가 위탁하여 보관하는 암호자산의 종류 및 수량
 - ② 암호자산업자는 자기 소유 암호자산과 이용자의 암호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종류와 수량의 암호자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③ 암호자산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이용자의 암호자산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암호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암호자산업자는 이용자의 암호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다.
- 제7조(보험의 가입 등) 암호자산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 제8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암호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당해 암호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 2.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주요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

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 ② 누구든지 암호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 인이 암호자산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
- 2. 암호자산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 3. 암호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 ③ 누구든지 암호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 3. 암호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 를 이용하는 행위
-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 ④ 암호자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생성한 암호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① 암호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암호자산업자는 암호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 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 다)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암호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암호자산업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이나 관계기관(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감독 및 처분 등

- 제10조(암호자산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암호자산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 지 여부를 감독하고, 암호자산업자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암호자산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 2.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3. 이용자 재산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 4. 거래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 5.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 6.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 7. 기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금융위원회는 암호자산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있다.
 -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 2. 경고

- 3. 주의
-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5. 수사기관등에의 통보 또는 고발
- ④ 금융위원회는 암호자산업자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 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암호자산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1. 해임권고
- 2. 6개월 이내 직무정지
- 3. 문책경고
- 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암호자산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해당 암호자산업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 제11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 제12조(벌칙) ① 제8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는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並科)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그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8조를 위반한 자가 제3자의 개입, 그 밖의 외부적 요인에 따른 가격변동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차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몰수·추징) ① 제8조를 위반한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②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14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 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12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1. 제5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지 아니한 자
 -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명부를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 소유 암호자산과 이용자의 암호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종류와

수량의 암호자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 4.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암호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암호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 5.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상거래를 감시하지 아니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6.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등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7. 제10조에 따른 검사·명령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